

제 목  
작성자 한지선  
안녕하십니까?

타기관 무급휴직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
등록일 2009-10-12 조회수 196

현재 타회사 무급휴직 상태의 사람에게

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연구실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게하여

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첨부

답 변 [답변] 타기관 무급휴직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

안녕하세요.

문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.

-> 질문: 현재 타회사 무급휴직 상태의 사람에게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연구실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게하여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

-> 답변: 이미 직업이 있는경우, 주관연구기관(해당학교)과 고용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,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첨부

답변자 국제전략팀

답변일 2010-05-13

목록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★★★★★ 매우만족  ★★★★☆ 만족  ★★★☆☆ 보통  ★☆☆☆☆ 불만족  ☆☆☆☆☆ 매우불만족

한줄의견

저장

☺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위 입력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빠른메뉴

- 
- 
- [연구관리](#)  
[통합로그인](#)
- 
- 
- 
- [연구사업](#)  
[통합시스템](#)
- 
- 
- [연구마루\(이공계\)](#)
- 
- 
-